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64

제출일자 : 2026. 8. 2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·퇴직(예정)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현행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부합하도록 후생복지 지원사항을 보완하고 신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근속・퇴직(예정)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사항 정비

-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을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서 우수·모범 공무원, 퇴직예정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(안 제6조제6호)
- 정년·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을 기념패 지급으로 변경(안 제6조제7호)

나. 건강증진 지원사업 범위 확대(안 제6조제9호)

- 건강검진비·예방접종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추가

다. 소속 공무원 생일 선물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10호)

라. 임신·출산 장려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11호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6. 7. 20. ~ 8. 10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 중 “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 예정자”를 “우수·모범 공무원, 퇴직예정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격려금품”을 “기념패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“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”을 “건강검진비·예방접종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

11. 소속 공무원의 임신·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축하·편의 물품 등 지원

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“후생업무”를 각각 “후생복지업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	6. 우수·모범 공무원, 퇴직예정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 ----------
7. 정년·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	7. ---------- 기념패 -----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	9. ---------- 건강검진비·예방접종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---
<신 설>	10.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
<신 설>	11. 소속 공무원의 임신·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축하·편의 물품 등 지원
10. (생 략)	12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제13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)	제13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,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, 위	④ ---- 후생복지업무----------, ----- 후생복지업무----------

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,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	----------. ------- -----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⑤ ~ ⑥ (생 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.	⑦ ----------, --- 후생복지업무 ----------.
⑧ ~ ⑪ (생 략)	⑧ ~ ⑪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· 휴양 · 안전 · 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